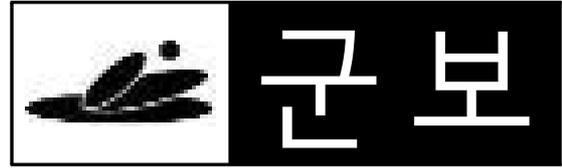


예 산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533호 2019. 3. 15.(금)

고 시

- 예산군 고시 제2019 - 22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
- 예산군 고시 제2019 - 27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3

공 고

- 예산군 공고 제2019 - 391호 : 공시송달 공고 5
- 예산군 공고 제2019 - 395호 : 2019년 추사기념관 유물 구입 공고 6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19-401호 :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3

회 람									
--------	--	--	--	--	--	--	--	--	--

예산군 고시 제2019 - 22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2. 28.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여(고시)일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

종전주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93~4)으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계촌리 374, 375-1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예당평야로 92-171	20190228	신축	20090825	지역특성 활용	
2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계촌리 371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예당평야로 92-186	20190228	신축	20090825	지역특성 활용	
3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계촌리 373, 372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예당평야로 92-184	20190228	신축	20090825	지역특성 활용	
4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 455-1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충령사로 132-7	20190228	신축	20091210	충령사를 경유하는 도로로 지역특색을 반영	
5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성리 292-5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성리목시길 33	20190228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성리)과 마한의 수도인 목지국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전해지는 고유지명(목시)을 이용하여 명명	
6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오산리 58-10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오산2길 56-88	20190228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오산리)을 이용하여 명명	
7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890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용궁2길 66-25	20190228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용궁리)을 이용하여 명명	
8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889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용궁2길 66-27	20190228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용궁리)을 이용하여 명명	
9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신흥리 1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장신신흥길 306-80	20190228	신축	20091113	장신리와 신흥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예산군 고시 제2019 - 27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3. 8.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여(고시)일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

종전주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93~4)으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584-5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81-147	20190308	신축	20090825	봉산면과 운산면을 연결하는 도로	
2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329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대덕로 232-12	20190308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대덕리)을 이용하여 명명	
3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 566-2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원포길 112	20190308	신축	20091113	예부터 내려오는 고유지명을 이용하여 명명	
4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 326-4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의좋은형제길 75	20190308	신축	20091113	고려시대 의좋은 형제 이야기의 실제 마을로 의좋은 형제길로 명명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NO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81-141	20190308	건축물 멸실 및 재건축	
2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원포길 114	20190305	건축물 멸실 및 재건축	

예산군 공고 제2019-39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소각금지 등)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예산군수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03. 12. ~ 2019. 03. 26.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성명	주 소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범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9번길 71-6	충남 예산군 덕산면 가루실길 103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위반 (생활폐기물 소각)	과태료 금250,000원

4. 공고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소각금지 등)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귀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통지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 독촉하오니 예산군청 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과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이 최대 60개월 까지 부과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예산군청 환경과 청소행정팀(☎.041-339-7524, FAX.339-7509)

예산군 공고 제2019 - 395호

2019년 추사기념관 유물 구입 공고

예산군에서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업적선양과 관련하여 유물을 구입하고 전시·연구자료 등으로 활용하고자 유물구입을 공고하오니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14일

예 산 군 수

1. 공고기간 : 2019. 3. 14. ~ 4. 2

2 구입대상유물

추사 김정희와 관련된 유물로서 역사적·학문적·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

※ 추사 김정희 친필 글씨와 그림을 우선 구입하고자 함

3. 참가자격 : 개인소장자, 문화재매매업자, 법인 또는 단체

※ 도굴, 도난,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자료는 매도신청 불가

4. 서류접수기간 : 2019. 3. 14.(목) ~ 4. 2(화) / ※ 접수시간은 09:00 ~ 18:00

5. 서류접수 방법 및 장소

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2019. 4. 2(화) 소인까지 인정함

나. (우편번호) 32417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49 유물구입담당자 앞

6. 제출서류

가. 유물매도신청서 및 매도희망유물명세서 1부

나. 신분증 사본 1부

다. (대리인) 소장자 본인이 작성한 유물매도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라. (법인 또는 단체)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1부

마. (문화재 매매업자)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바. 유물사진 (근접촬영 칼라사진)

사. 전적의 경우 반드시 내지 첫째 면을 촬영한 사진 제출

※ 위 항목의 서류가 미비된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서류심사후 실물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실물 접수시 구입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자료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서류심사 결과 통보 및 유물 접수

가. 서류심사 결과 통보 및 유물 접수 : 2019년 4월 중

※ 상세일정은 심사 결과에 따라 추후 통보.

나. 서류를 심사한 후 평가대상 유물로 선정될 경우 개별 통보

다.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실물 유물 접수 및 접수일자 별도 통보

8. 구입유물 선정 및 가격평가

유물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구입대상유물을 결정하되 가격평가와 최종 결정은 유물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에 의함.

9. 구입 결정 및 소유권 이전

가. 구입대상으로 최종 결정된 유물은 유물매매계약을 체결하되 구입 가격은 유물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나. 유물매매계약 체결이후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예산군에 귀속되며, 이후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함

10. 기타 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유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다.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본인에게 통보하여 반환함.

라. 기타 사항은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 추사고택팀(041-339-8241,82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유물매도신청서 및 매도희망유물명세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유물 매도시 유의사항

- 매도희망유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함
- 유물의 접수는 신청서류 및 유물사진을 검토한 후 구입예정유물로 선정된 경우 개별 통지하여 유물을 접수함
 - ※ 필요시 매도신청유물을 실물 평가한 후 신청서 접수
- 구입유물의 결정은 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짐
- 구입하려고 접수된 유물이라도 심의과정에서 반환이 결정될 수 있음
- 구입 금액은 신청자의 매매희망가보다 하락될 수 있음
- 매매에 소요되는 비용(포장비, 운송비 등)은 전액 매도 희망자가 부담해야 함
- 매도가 종결된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예산군에 귀속되며, 이후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매도가 종결된 유물이라 할지라도 향후 가품, 장물, 도굴품 등으로 판명될 경우 매도자는 대금을 전액 반환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해야 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

○ 예산군은 민원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유물매도신청서 접수, 유물매매 등 신청 민원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동의 】

○ 귀하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정부의 정책 기획 및 통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 내용에 따라 제공하게 됩니다

- 정보 제공 범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
- 정보의 이용 목적 : 유물 구입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영구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은 각 업무별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예산군 공고 제2019-401호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2. 개정이유

-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58.6%로 낮아 일반회계 의존이 심화되고 2004년 이후 15년간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여건에 어려움이 있어 상수도요금을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업종별요금표 일부 변경(별표 2)

4. 입법예고기간 : 2019. 3. 14. ~ 2019. 4. 3.(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 예산군 수도과, 주소 :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22(8층), 우편번호 : 32435)에게 서면이나 메일(xxaw08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수도과 상수도운영팀 **☎(041)339-832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경우 또는 부과된 요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업종별 요금표(제29조 관련)

업종	사 용 구 분 (m ³ /월)	인상전	인 상 후(원)			비고
			2019년	2020년	2021년	
가정용	1 ~ 20이하	630	720	800	840	
	21 ~ 30이하	920	1,050	1,160	1,230	
	31 ~ 40이하	1,090	1,240	1,370	1,460	
	41이상	1,240	1,420	1,570	1,660	
일반용	1 ~ 50이하	1,000	1,140	1,260	1,330	○ 1일 500톤 이상 제조업체 톤당 970원 적용
	51 ~ 100이하	1,150	1,310	1,450	1,530	
	101 ~ 300이하	1,360	1,550	1,710	1,810	
	301이상	1,680	1,910	2,110	2,240	
대중 탕용	1 ~ 500이하	880	1,000	1,110	1,170	
	501 ~ 1,000이하	1,000	1,140	1,260	1,340	
	1,001 ~ 2,000이하	1,140	1,310	1,440	1,530	
	2,001이상	1,280	1,460	1,610	1,700	
전용 공업용	1 ~ 200이하	520	600	660	700	
	201이상	620	710	780	840	

※ 연도별 적용구분

2019년: 2019년 7월 부과분~2020년 6월 부과분

2020년: 2020년 7월 부과분~2021년 6월 부과분

2021년 이후: 2021년 7월 부과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업종별요율표(제29조 관련)				[별표 2] 업종별요율표(제29조 관련)						
구분 업종별	사 용 요 율		비 고	업종	사 용 구 분 (㎡/월)	인상전	인 상 후(원)			비고
	사용구분 (톤/월)	톤당 단가 (원)					2019년	2020년	2021년	
1.가정용	1~20이하	630		가정용	1~20이하	630	720	800	840	
	21~40이하	940			21~30이하	920	1,050	1,160	1,230	
	41이상	1,240			31~40이하	1,090	1,240	1,370	1,460	
			41이상		1,240	1,420	1,570	1,660		
2.일반용	1~100이하	1,050	○ 1 일 500톤 이상 제 조 업 체 톤당 970원 적용	일반용	1~50이하	1,000	1,140	1,260	1,330	○ 1 일 500톤 이상 제 조 업 체 톤 당 970 원 적용
	101~300이하	1,360			51~100이하	1,150	1,310	1,450	1,530	
	301~1,000이하	1,470			101~300이하	1,360	1,550	1,710	1,810	
	1,001~2,000이하	1,580			301이상	1,680	1,910	2,110	2,240	
	2,001이상~	1,680								
3.대중탕용	1~500이하	880		대중 탕용	1~500이하	880	1,000	1,110	1,170	
	501~1,000이하	1,000			501~1,000이하	1,000	1,140	1,260	1,340	
	1,001~2,000이하	1,140			1,001~2,000이하	1,140	1,310	1,440	1,530	
	2,001이상	1,280			2,001이상	1,280	1,460	1,610	1,700	
4.전용공업용	1~200이하	520		전용 공업용	1~200이하	520	600	660	700	
	201이상	620			201이상	620	710	780	840	

※ 연도별 적용구분

2019년: 2019년 7월 부과분~2020년 6월 부과분

2020년: 2020년 7월 부과분~2021년 6월 부과분

2021년 이후: 2021년 7월 부과분~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자치법규명: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